

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

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계획



충청북도
식의약안전과

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계획

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시행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.

I. 추진 근거

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제3항제1호
- 「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4조, 제11조,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- 식품진흥기금 용자업무 위탁관리 약정 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
II. 시행 계획

1 사업 개요

- 사업비 : 3억원 (식품진흥기금) ※ 예산 소진시까지
- 용자대상 및 한도액
 - 위생관리시설을 개선·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·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

용자 대상	용자 한도액	적용금리
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(HACCP) 적용업소	2억원 이내	연리 2%
식품제조·가공업소	1억원 이내	연리 2%
식품접객업소	5천만원 이내	연리 2%
※ 화장실 개선시 : 용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(연리 1%)		

- 상환방법 : 5년(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)
 - 대출취급기관에 월별(원금+이자) 납부,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

2 선정기준 및 추진방법

□ 선정기준

○ 용자 대상시설 우선 순위

- 식품제조업소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업소
-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
- 인증업소 (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, 대물림업소, 밥맛좋은집, 향토음식거리 지정업소, 모범음식점) 등

○ 용자 제외대상

- 무신고 업소, 신규업소(지위승계 포함)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
※ 단, 향토음식거리 조성 대상(선정)업소는 영업 신고 후, 용자 가능
-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·가공업소
-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(과징금 포함)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, 영업정지(허가취소)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·폐업 업소
- 기(既) 시설개선 용자를 받은 후, 10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
- 용자금 회수 조치를 받은 후,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

【용자금 회수 대상】

- ▶ 용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▶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(허가 취소) 또는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
- 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은 경우
- ▶ 용자받은 후, 5개월 이내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(식품접객업은 3개월)
※ 단, 사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연장 가능

□ 추진방법

- (시군) ① 사업시행 공고 ② 접수된 용자신청서[별지 1, 2호]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지 조사[별지 3호] 등을 통하여 용자 대상 적격 여부 확인
③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용자 대상 우선순위 확정 후, 용자대상업소 명단[별지 4호]을 도에 제출
- (도) 용자계획 초과 시, 용자 금액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

3 용자업소 관리

구 분	역 할
충청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용자업소 총괄관리 ▶ 용자업소별 차입 잔액 및 용자기한 등 실적 관리
시·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용자업소는 시설개선 사업 완료 후, 시군에 「사업 완료 신고서」 제출 ▶ 시군에서는 「사업 완료 신고서」 및 「식품진흥기금 용자 사후관리 카드 [별지 5호]」 사본을 30일 이내 도에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용자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 완료 사항 확인 및 기타 변동 사항 농협 통보 등 용자금 상환기간 완료 시까지 관리
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용자금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용자금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 ▶ 매월 용자 대상업소별 이자액 및 상환액 관리

Ⅲ. 행정 사항

- 용자 지원사업 안내 홈페이지 게시(도) 및 공고(시·군) : 2~3월
- 용자 대상 파악 조사 및 선정 보고(시·군) : 3월말
 - ※ 읍면동 및 외식업 지부 등을 통해 희망업소가 누락 되지 않도록 조치
- 선정 보고 후, 예산액 한도 미달 시 추가 신청(시·군) : 연중
- 용자 대상 변동 사항 등 수시 보고(시·군) : 연중

- 붙임 1. 식품진흥기금용자 신청서류 1부.
 2. 현지 조사서 및 용자대상업소 명단 각 1부.
 3. 식품진흥기금 용자업소 사후관리 카드 1부. 끝.